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 등〉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44호)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57호)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87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1.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144호)	1
2.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457호)	2
3.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687호)	3
II . 검토의견	4
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	4
2. 상장회사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 도입(박주민의원안)	8
3.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의무화(강훈식의원안)	13

I. 개요

1.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5.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2.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4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13.
- (3) 회 부 일 : 2024. 6.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

3.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68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20.
- (3) 회 부 일 : 2024. 6.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

-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정준호의원안), 총주주(박주민의원안), 주주의 이익(강훈식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현행	정준호의원안	박주민의원안	강훈식의원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 ----- -----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 -----.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 ----- ----- 회사와 총주주----- ----- -----.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 ----- -----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 -----.

- 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382조의3).

- 이사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¹⁾, 이사의 책임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998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함.²⁾

□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회사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자체의 손익에 영향이 없지만 일반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³⁾

-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사업부문의 분리로 인한 주주의 수익권, 처분권이 몰취되는 등 분할회사(분할되는 기존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분할회사 소수주주의 권리가 분할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인 앞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⁴⁾

2) 법률 제55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1998. 12. 28. 일부개정 및 시행) 주요내용

다.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法 第382條의3).

3) 합병, 분할, 주식병합 등과 같이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체법적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의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인정할 경우 주주보호에 흠결이 발생한다는 의견[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상사법연구 제41권제2호(2022), p.422~423]

- 물적분할을 통해 법인격을 분리해서 자회사를 만든 뒤 이 자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모회사)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매우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 회사를 쪼개 놓았기 때문에 1개의 회사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회사라는 법인의 계좌에 달리 손해도 없기 때문이다.

4)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대하여, 회사의 핵심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별도법인으로 신설되는 경우 ① 핵심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는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법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기존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권 박탈’ 또는 ‘핵심사업

□ 다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 여부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이사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⁵⁾, 이사가 주주와의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⁶⁾⁷⁾

부분의 독립 상품화로 인한 소액주주의 수익권, 처분권 몰취' 등 소액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②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기존회사의 대주주는 기존회사에 대한 지배력만으로 신설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어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기존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기존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인 앞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분석이 있음(류호연·이수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2, p. 6~7).

- 5) 판례는 이사의 행위가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충실의무를 선관주의의무와 별개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송옥렬, 상법강의 제12판, 2022년, p.1044).
-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 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6)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7)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기반하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거나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성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권재열, 이른바

- 회사의 이익과 일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주 간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가 서로 상충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⁸⁾⁹⁾

‘쪼개기 상장’을 둘러싼 제도정비 방안 검토, 상사법연구 제41권제2호(2022), p.124~125]

8) 권재열, 앞의 글, p.123~126

: 지배주주가 장기실적(long-termism)을 요구하는 반면에 소수주주는 단기실적(short-termism)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면 이사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데, 이는 사실상 소수주주가 다수주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지분다수결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

9)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사·이사 간 위임계약에 근거한 회사법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확인하고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송 남발로 인한 사법리스크 증가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임.

2. 상장회사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 도입(박주민의원안)

- 개정안은 상장회사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에 회사의 보수정책 목표와 원칙, 보수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42조의14(이사의 보수) ① 상장회사에서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보수정책 목표와 원칙, 보수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을 부결한 때에는, 직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수는 무효이다. ④ 상장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이하 ‘보수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이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388조¹⁰⁾).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뿐만 아니라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포함됨(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에 회사의 보수정책 목표와 원칙, 보수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라 함)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려는 취지임.

○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상한액을 정한 후 구체적인 배분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10)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처리¹¹⁾하는 실무관행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있음.

□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¹²⁾에 비추어 볼 때 상장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 대가 및 경영성과 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별로 성과를 평가한 후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의 규모, 업종 등 다양성 및 그동안의 실무관행을 고려하여 이사의 보수결정방식에 관한 규제를 상장회사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이사의 보수 규제를 위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¹³⁾), 금융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임직원

11)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1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14).

□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 13)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4)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4. 보수위원회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및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정책을 부결한 경우의 보수 지급 및 초과 보수의 효력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직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사의 보수에 관한 원칙 규정(제388조)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주주총회 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의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이 크지 않음.¹⁵⁾

15)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을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비록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3.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의무화(강훈식의원안)

-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특례)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68조의4¹⁶).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개정 「상법」(법률 제9746호)에서 도입됨.

- 16)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도 개최 정기주주총회에서 922개의 회사가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이용하였고, 전자투표 행사율은 역대 최고치인 11%(주식 수 기준)를 기록함.¹⁷⁾

< 최근 3개년 K-VOTE 이용회사 수 및 행사실적(정기주총 기준) >

구 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총계
2022년	391개사	526개사	7개사	50개사	974개사
2023년	356개사	450개사	6개사	46개사	858개사
2024년	389개사	477개사	6개사	50개사	922개사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의결권 행사 주식수	53.5억주	52.3억주	58.5억주
총 의결권 있는 주식수	548.5억주	512.6억주	533.0억주
행사율	9.8%	10.2%	11.0%

(출처: 2024. 4. 17.자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 개정안은 상장회사¹⁸⁾에 대한 특례로서 전자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주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

17) 2024. 4. 17.자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4년도 정기주총 K-VOTE 전자투표 행사율 11% 달성 - 법인 주주의 투표 활성화 및 국내 4대 연기금의 K-VOTE 이용 지속 결과 -”

18)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거래소)가 증권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을 말함(「상법 시행령」 제29조)

보장과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루머 등으로 인하여 투표 결과가 왜곡되는 등 현장에서의 의사 진행이나 토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참여 저조현상은 주주 스스로의 의식, 즉 경영참여보다는 투자수익에 관심을 두는 소액투자자의 속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주주총회 참여 증가 등 소주주주의 주주권 행사 확대에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